

Volume IV

부록 (규정과 내규)

1. 건축위원회 규정
2. 사랑의 헌금위원회
3. 행정운영 내규
4. 축하화환 증정
5. 장례와 교회의 조의표시
6. 사역장, 기관장, 팀장의 임기
7. 기타 회의



1. 건축위원회 규정 (2015년 11월21일)

감리교 장정 제2544조에 의거해 와싱턴한인교회는 다음과 같은 건축위원회를 둔다.

제1조: 건축위원회는 임시위원회로 둔다.

제2조: 본 위원회에 1명의 위원장과 6명 이상의 위원을 둔다. 그 임기는 교회건축의 완성 시기까지로 한다.

제3조: 본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합동임원회에서 추천하여 구역회 (Charge Conference)에서 선출한다.

제4조: 본 위원회에 총무와 회계를 둔다. 총무와 회계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5조: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진다.

- 1) 본 위원회는 본 교회 건물 전문위원회(Building Study Committee)보고에 입각하여 예배실, 학교 교실, 친교실 등을 포함한 모든 교회 건축에 관한 설계와 재정계획을 확립하여 감리교 연회 지역 건축위원회(District Board of Church Location and Building)와 교회 총회(Church Conference)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본 위원회는 상기한 승인을 받은 후 County Commission of Zoning Appeals로부터 건축에 필요한 모든 허가를 받아야 한다.
- 3) 본 위원회는 상기한 승인과 허가를 받은 후 건축설계와 재정계획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 4) 본 위원회는 면허가 있는 건축설계자를 채용하고 또한 경쟁입찰로 건축업자를 채용하여 그 업무를 감독한다.

2. 사랑의 현금위원회 규정 (2015년 11월 21일)

1) 목적:

교회내의 재정적 및 직업 알선이 필요한 이웃을 돕기 위한 기관이다.

2) 조직:

목사, 평신도대표, 재정위원장, 돌봄과 양육 사역장, 장로 1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담임목사가 맡는다. 모든 안건은 confidential 하게 다룬다.

3) 대상:

본 교회 교인으로 개인의 형편상 생활비, 병원비, 월세 등의 지급이 불가능하거나, 혹은 직업 알선이 필요한 교인들을 상대로 한다.

4) 지급 내용:

증여 혹은 대출

5) 지급 방식:

일시금 혹은 때에 따라 결정한다.

6) 모금:

매년 특별헌금으로 모금하고, 1년에 한 번씩 합동임원회의에 보고한다.

7) 소속:

사랑의 현금 위원회는 목회실 산하에 둔다.

3. 행정운영 내규 (1986년 6월 29일) - 행정운영 내규 제1호

1) 제목:

와싱턴한인교회 행정운영 내규

2) 목적:

이 행정운영 내규는 와싱턴한인교회의 행정과 운영상 필요로 하는 내규의 제정과정과 체재(양식), 시행과 운영, 행정내규 자체의 관리와 책임 등을 규정하는데 있다.

3) 적용 범위:

와싱턴한인교회의 행정운영 전반 (단, 본 내규 발효 전에 각종 형태로 존재해온 모든 내규들은 본 체재로 이전될 때까지 그대로 효력을 지속한다).

4) 내용:

- a. 내규의 제정 - 행정운영 내규는 관할 담당기관 부서장의 기초와 천거로 합동임원회 출석 인원 2/3 이상의 동의로 제정되며 담당부서나 담당기관이 분명하지 않거나, 내규가 교회 전반에 해당될 경우에는 합동임원회 임원이 합동임원장을 통해 상기와 같은 절차로 제정된다.
- b. 내규의 체재(양식) - 별첨한 기본 양식 참조
- c. 내규의 시행과 운용 - 행정운영 내규의 시행 및 발효 일자 는 내규 제정 과정에서 정하며 시행중 문제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생길 때는 미국연합감리교회의 규정을 참조한다.
- d. 내규의 수정 또는 폐기 - 특정 내규의 수정이나 폐기도 제정과정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 e. 내규의 관리와 책임 - 모든 내규의 관리, 정돈, 보관, 그리고 내규철 배포나 배포범위 등의 책임은 합동임원장에게 있으며, 평신도대표와 합동임원회 서기가 합동임원장의 책임 수행을 보좌한다.
- f. 기타사항: 본 내규 제정 이전에 시행되어 온 내규의 이전 작업은 평신도대표와 합동임원회 서기의 보좌로 합동임원장이 수행한다.

5) 행정운영 내규 기본양식

와싱턴한인교회 행정운영 내규

제목: (보편적이고 알기 쉽게)

목적: (간결한 목적 설명)

적용 범위: (적용 범위의 한계가 필요한 경우에만)

내용: (상기 제목에 관한 행정운영 내규의 상세하고도 체계화된 설명 - 체재는 내용이나 설명에 필요한 항목과 규모에 따라 다양성을 지님)

기타사항: (필요에 따라)

예외: (필요에 따라)

원래의 제정된 내규가 수정, 발효되었을 경우에만 그 일자를 명시한다.

4. 축하 화환 증정 (1986년 6월 29일) - 행정운영 내규 제2호

1) 제목:

축하 화환 증정

2) 목적:

이 내규는 본 교회로서 축하의 뜻을 표시하기 위해 화환을 증정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는데 있다.

3) 적용 범위:

본 교회로서 축하의 뜻을 표시해야 할 경우에 한한다.

4) 내용:

화환을 증정할 수 있는 경우를 (1) 교인 개인에게 생기는 경사 (2) 교인이 주동하는 사회적 중요 경사 (3) 교계 및 사회적 대경사와 기타 경사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화환 증정 천거 및 결정 과정과 경비 부담을 아래와 같이 규제한다.

a. 교인의 개인적 경사 - 개업, 예술 발표 등(결혼, 출산, 입주, 학위 취득 등은 제외)

교인에게 개인적인 경사가 생길 때, 해당 지역장이 화환 증정을 천거할 수 있고, 교회의 재정상태를 참작하는 가운데, 담임목사, 합동임원장, 재정위원장 3인의 동의로 결정하며 그 경비는 해당 지역과 교회가 협의하여 담당한다.

b. 교인이 주동하는 사회적 중요 경사 - 교인이 주동하는 사회단체에 중요한 경사가 있을 때 해당 지역장, 담임목사, 합동임원장, 혹은 평신도대표가 화환 증정을 천거

할 수 있고, 그 결정은 교회 재정상태를 참작하는 가운데 담임목사, 합동임원장, 재정위원장, 지역장 4인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그 경비는 해당 지역과 교회가 협의하여 담당한다.

c. 교계 및 사회적 대경사와 기타 경사 - 교계 및 사회적 대경사나 상기한 1항 및 2항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경사가 있을 때, 담임목사, 합동임원장, 혹은 평신도대표가 화환증정을 천거할 수 있고, 교회 재정상태를 참작하는 가운데 담임목사, 합동임원장, 재정위원장 3인의 합의로 결정하며 그 경비는 교회가 전담한다.

d. 상술한(1, 2, 3항) 결정 과정에서 결정권자 한사람만이 연락불능 혹은 출타 중인 경우에는 나머지 결정권자가 이를 결정할 수 있고 결원이 더 많을 경우에는 결정할 수 없다.

e. 화환증정에 드는 교회부담 경비는 예비비 예산에서 지출한다.

5. 장례와 교회의 조의 표시 (2015년11월 21일) - 행정운영 내규 제3호

1) 제목:

장례와 교회의 조의 표시

2) 목적:

이 내규는 교인의 별세시 교회로서의 조의 표시방법과 그 한도를 규정하는데 있다.

3) 적용 범위:

본 교회에 교적을 둔 교인의 별세시에 한한다.

4) 내용:

조의 표시의 방법은 교회장과 교인장의 두가지로 구분하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a. 교회장 - 현직 담임목사의 별세시, 합동임원장이 장례준비위원회를 구성, 장례절차에 필요한 모든 준비(집례목사, 조화, 찬양대 동원과 특송자 등)와 연락(초청)을 수행하며, 장례에 소요된 모든 경비는 교회가 부담한다.
- b. 교인장 - 본 교회에 교적을 둔 교인의 별세시 담임목사가 장례를 주관하며, 교회의 이름으로 조화를 봉정하고 찬양사역장은 찬양대의 동원 혹은 시간적 제약으로 찬양대의 동원이 어려울 경우, 최선을 다해 특송과 반주를 준비하도록 한다.
- c. 집례목사 - 교인장의 경우 추도식과 장례식의 집례는 담임목사가 맡는 것이 원칙이되, 유가족의 소망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다.
- d. 예산 - 필요한경우, 장례관계에 소요되는 경비는 돌봄과양육사역부의 '성도돌봄' 예산에서 지불한다.

6. 사역장, 기관장, 팀장의 임기 - 행정운영 내규 제4호

1) 제목:

사역장, 기관장, 사역팀장의 임기

2) 목적:

이 내규는 사역장, 기관장, 사역팀장의 임기를 뒤 해당 사역이 한 개인의 특성에만 국한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사역의 다양성과 변화를 꾀하는데 있다.

3) 적용 범위:

본 교회의 모든 사역장, 기관장, 팀장과 이에 준하는 평신도자원사역 리더들에 한한다.

4) 내용:

- a. 사역장, 기관장, 팀장의 임기는 기본적으로 3년으로 정한다.
- b. 꼭 필요한 경우 사역장, 기관장, 팀장의 임기가 1회 또는 1년씩 연임이 가능하지만 연속적으로 6년 이상을 연임하지 못하도록 한다.
- c. 특정 사역에서 6년간 연임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사역에서 1년을 쉬 후, 필요 하다면 다시 해당 사역에 사역장, 기관장, 팀장으로서 역할을 담당한다.

7. 기타 회의

미 연합감리교회 교단에 속해있는 우리교회는 자체운영을 위한 여러가지 회의들 (예: 부서 별 회의, 기관장, 사역장 회의, 합동임원회 등) 이외에 교단의 헌법이라고 볼 수 있는 “장정“ (The Book of Disciplin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의 정한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회의들이 소집되어 운용될 수 있다.

1) 구역회 (Charge Conference)

구역회는 목회 구역 내에 있는 연합감리교회 연대조직의 기본단위이며, 장정이 명시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 해마다 모이도록 되어 있다. 한 구역 (Charge)은 보통 한 교회 (Church)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그 밖에 둘, 또는 그 이상의 교회들로 구성된 경우도 있다. 구역회는 그 구역이 소속되어 있는 지방 (District)의 감리사 (District Superintendent)가 날짜를 정하여 소집하고, 회의장소는 구역회가 정한다. 회의는 감리사가 주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정기 구역회 이외에 필요에 따라, 특별구역회가 소집, 진행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장정 제246조 항 7항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면 된다. 구역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들 곧 회원, 소집, 진행, 권한과 의무 등에 관한 것 들은 장정 제246조 항에서 제251조 항에 걸쳐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면 된다.

2) 교회 총회 (Church Conference)

교회 총회는 더 많은 교인의 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역회를 대신하여 모이는 회의이며, 한 구역 안에 여러 교회가 있을 경우에는, 각 개체교회도 교회 총회로 모일 수 있다. 교회 총회는 지방 감리사의 재량으로 소집되거나, 목사나 교회 임원회 또는 개체교회 교백 교인의 10%가 지방 감리사에게 서신으로 요청할 경우 소집될 수 있다. 교회 총회의 소집, 진행상의 규정들은 장정 제246조 항과 제247조 항에 명시된 구역회를 위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 그 밖에 교회 총회의 권한과 임무 등은 장정 제248조 항과 제249조 항을 참조하면 된다.

3) 교인 총회 (Congregational Meeting)

교인 총회는 그 내용이 장정에는 자세히 기술되어 있지 않고, 다만 장정 제260조 항에 교회가 소속 연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모일 수 있는 회의 중의 하나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제16조 항 3항에 의하면 교인 총회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규정은 총회 (General Conference)의 사법 위원회 판정 (Judicial Council Decision) 411을 참조하도록 기술되어 있다. 교인 총회에 관련된 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참조하면 된다.